

2020년 경기도소방 공무원직원 통합 채용시험 공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공무원직원(무기계약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가. 채용분야

소계	영양관리사	조리사		조리사(단시간)		사무보조	청소원
		일반	장애인	일반	장애인		
65	35	7	3	7	9	1	3

나. 선발예정인원

(단위 : 명)

직종	선발 예정인원	소방관서별 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총계	65		
소계	35		
영양관리사	35	수원 1, 수원남부 1, 성남 1, 분당 1, 부천 1, 안양 1, 안산 1, 용인 1, 평택 1, 송탄 1, 광명 1, 시흥 1, 군포 1, 화성 1, 이천 1, 김포 1, 광주 1, 안성 1, 하남 1, 의왕 1, 오산 1, 여주 1, 양평 1, 과천 1, 고양 1, 일산 1, 의정부 1, 남양주 1, 파주 1, 구리 1, 포천 1, 양주 1, 동두천 1, 가평 1, 연천 1	- 식품위생법 제52조 ‘영양사’ 주요업무 - 구내식당 운영 (식당운영위원회 운영, 식대관리 등) - 소방서 조리사 지도 감독 - 직원 영양교육 등

직종		선발 예정인원	소방관서별 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소계		26		
조리사	조리사	7	경기도소방학교 1, 광주 1, 남양주 1, 광명 2, 오산 1, 파주1	- 조리업무 및 위생관리 등
	단시간 조리사	7	부천 1, 포천 1, 화성 1, 의왕 1, 남양주 1, 파주 1, 광명 1	
	조리사 (장애인)	3	용인 1, 파주 1, 포천 1	
	단시간 조리사 (장애인)	9	부천 1, 안양 2, 화성 1, 안성 1, 하남 1, 의정부 1, 남양주 1, 양주 1	
소계		1		
사무보조		1	소방재난본부 1	- 해피콜 업무 - 민원처리 불편신고 전화 상담 - 행정업무 사무보조 등
소계		3		
청소원 <small>*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small>		3	경기도소방학교 2, 일산 1	- 청소 및 청사 관리 등

※ 동시 채용진행으로 중복접수 불가

2. 채용기준 및 자격조건

□ 공통기준

가. 응시결격사유 : 「경기도 공무원 등 관리규정」 제10조 및 제44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경기도 공무원 관리규정
<p>【제10조 결격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p>【제44조 정년】</p> <p>-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원·경비원 직종은 65세로 한다.</p>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다. 거주지 제한 : 공고일 前 일 (2019.11.7.)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공고일 前 일(2019.11.7.)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위의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함

□ 추가기준(영양관리사, 조리사)

- 응시결격사유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식품위생법 관련법령

【법 제40조(건강진단)】

-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직종		자격조건	우대요건
영양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자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거 면허를 취득한자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직무분야 “조리”의 자격증 소지자의 면허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급식소¹⁾ 영양사 근무 경력자 -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 프로세서
조리사	조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기능사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직무분야 “조리”의 자격 소지자 * 조주기능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 등의 조리사 경력자
	단시간 조리사		
	조리사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자 - 조리기능사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직무분야 “조리”의 자격 소지자 * 조주기능사 제외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단시간 조리사 (장애인)		
사무보조 (해피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직무분야 ‘사무’의 컴퓨터활용능력 1급 이상 자격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 등의 사무보조 경력자 - 워드프로세서 자격자
청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 등의 청소원 경력자 -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

1) 집단급식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기업 등의 1회 50인 이상 급식소

*청소원 이외 우대조건의 경력 기준은 자격증 취득 이후 근무 경력

3. 고용조건

가. 시작일 : 2020. 1. 6.(월) **字 예정** *채용 일정에 따라 근로시작일 변경 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및 연봉

- 보 수 :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규정」에 의함
- 근무시간 : 주40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주5일 근무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30시간(1일 6시간, 휴게시간 제외), 주5일 근무
- 기타사항 : 업무상 필요한 경우 토/일/공휴일 근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4. 시험일정

채용절차	추진일정	장 소	소요기간
채용공고	2019. 11. 8. ~ 11. 18.	홈페이지 [(북부)본부, 소방학교 및 소방서, 경기도청]	7일
원서접수	2019. 11. 19. ~ 11. 21.	경기도소방재난본부	3일
1차 서류심사	2019. 11. 22. ~ 11. 27.	경기도소방재난본부	4일
1차 합격자 발표	2019. 11. 29.(금) 14:00	홈페이지[(북부)본부, 소방학교 및 소방서]	1일
2차 조리사 실기시험	2019. 12. 7. ~ 12. 8.	별도공고	2일
3차 면접시험	2019. 12. 9. ~ 12. 11.	경기도소방학교	3일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12. 23.(월) 14:00	홈페이지[(북부)본부, 소방학교 및 소방서]	1일
채용후보자 등록	2019. 12. 30. ~ 12. 31.	임용예정기관	2일
근로계약서 체결	2020. 1. 2. ~ 1. 3.	임용예정기관	2일

가.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기간 : 2019. 11. 19.(화) ~ 11. 21.(목) / 3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 수 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3층 별관 대회의실

[주소 :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권선동) 경기도소방재난본부 3층 대회의실 공무원 담당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등기)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자의 경우 2019. 11 .22.(금) 18시까지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채용일정이 **동시 진행함에 따라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제출서류 미첨·미비 등일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 접수기간 내에만 보완가능하며 접수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된 응시표는 면접시험(조리사 실기시험) 시 반드시 지참하셔야 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표 분실 시는 시험전형 전일 18시 까지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에서 본인임을 확인 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우편접수자 중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에 방문하여 반드시 응시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방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영양관리사, 사무보조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경력사항 점수, 자격증 점수 및 심사항목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자격증 가점(최대 10점)	
· 컴퓨터활용능력 : 2급(2점), 1급(5점)	*다수 보유 시 높은 점수 1가지 점수만 부여
· 워드프로세서 : 5점	*워드프로세서는 보유자격 구분 없음

▶ 청소원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경력사항 점수, (준)고령자 점수 및 심사항목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준)고령자 가점(최대 10점)		비고
나 이	배점	· 준고령자(50세~55세 미만) · 고령자(55세 이상)
고령자	10점	
준고령자	5점	
해당없음	0점	

▶ 조리사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경력사항 점수 및 심사항목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 1차 서류심사 동점자 결정방법 : 3배수 이내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심사항목

- ▶ 제출서류 종류(미비, 미 첨부), 채용자격조건, 우대요건, 허위 기재 및 위조 여부 등 적격여부 확인
- ※ 결격사유, 채용관련서류가 미비·미첨 및 허위·위조로 확인될 경우 탈락

○ 2차 시험 : 조리사 실기시험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한 조리사
- 평가방법
 -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리 능력을 심사
 - ※ 평정요소(3개 항목) : ① 음식을 조리하는 태도 ② 청결 상태 ③ 음식의 맛
 - ▶ 실기과목(음식) : 시행부서에서 별도 선정 / 실기시간 : 30~60분
 - ▶ 절대평가(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총합의 평균으로 평정점수 산정)
- 평가결과 : 미공개

○ 3차 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평가방법
 -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평정
 - ※ 평정요소(3개 항목)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업무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업무 성실성 및 예의·품행
 - ▶ 절대평가(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총합의 평균으로 평정점수 산정)
 - * 위원외 과반수가 1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탈락

○ 최종 합격자 결정

- 직종별 최종 합격자
 - ☞ 영양관리사, 사무보조, 청소원 : 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조 리 사 : 실기시험 점수 및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 선발예정인원의 1배 별도선발
- ※ 면접합격자가 임용될 수 없을 때 추가 합격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방법

1.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2. 자격증 다수 보유자(영양관리사, 사무보조), 고령자(청소원) 실기시험 점수가 높은 자(조리사)
3.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나. 채용후보자 등록

○ 대 상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는 제외, 예비합격자의 경우 추가 합격자 발표 시 등록절차 진행

○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병원 발행분)

○ 채용후보자 등록 전 확인사항

- 채용신체검사서를 통한 부적합 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
- 면허증 및 자격증의 유효여부 확인하여 자격상실 등 발생 시 합격취소

7. 응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 고
공 통	1. 응시원서 <별지 1호> 2. 이력서 <별지 2호> 3. 자기소개서 <별지 3호> 4.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4호> 5.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별지 5호> 6.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7. 주민등록초본(원본, 병역사항 포함_남자에 한함) 1부	
개별 (해당자)	1. 영양사 면허증(사본) 및 조리사 면허증(사본) 각 1부 ※ 영양관리사 해당 2. 보건소발급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원본) 1부 ※ 영양관리사, 조리사 해당 3. 경력(재직)증명서(원본)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인정되며 경력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붙임1] 제출서류 양식에 있는 <별지 6호>경력증명서 서식으로 반드시 작성 제출 / 별도 서식 불인정 4. 사무관련(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사본) 1부	

가. 항목별 주의사항

○ 면허증 및 자격증

- 면허증 및 자격증 인정 기준일자 : 원서접수 前 일(2019. 11. 18.)

※ 면허증 및 자격증은 채용후보자 등록까지 유효하여야 함(자격상실 등의 경우 합격취소)

-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발급신청일이 아닌 면허(자격)증 취득일 기준
- 폐지된 면허증 및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경력 및 재직증명서

- 경력 인정 기준일자 : **공고일 前 일(2019. 11. 7.)**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사본 제출 시 불인정)**
- <별지 6호> 경력증명서 서식을 활용하여 반드시 작성
 - * 근무부서, 기간, 직급(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 * 영양관리사의 경우 집단급식소 해당유무를 반드시 작성 - (유) / (무)
- 경력증빙자료 제출
 -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반드시 제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 폐업회사의 경우 <별지 7호>근무경력 사실확인서 및 폐업자 정보 사실 증명서 함께 제출
 -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2019. 11. 8.)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도 전입일자가 확인 가능해야함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나. 채용신체검사서 등 기타 필요서류는 최종 합격자만 제출

- ※ 제출서류 중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 경과 시 제출서류 폐기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 인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퇴사 등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근무시작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로 합격자(예비합격자 중 고득점 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의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스테이플러 사용금지, 클립 활용)
 - * 응시 제출서류(공통서류, 개별서류)는 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방재난본부 소방인사팀(031-230-281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1부.
2. 2020년 공무원직원 소방관서별 현황 1부.
3. 2019년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봉급표 1부. 끝.

2020년 공무원 소방관서별 현황

연번	소방서명	주소지	우편번호	연락처
1	소방재난본부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권선동)	16550	031-280-2818
2	경기도소방학교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11번길 42(봉명리)	17118	031-329-0213
3	수원소방서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89번길 12(정자동)	16335	031-8012-9212
4	수원남부소방서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권선동)	16550	031-639-8213
5	성남소방서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11(수진동)	13323	031-720-0212
6	분당소방서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4(서현동)	13590	031-8018-3215
7	부천소방서	부천시 신흥로 115(중동)	14612	032-650-4103
8	안양소방서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32(관양동)	14054	031-470-0102
9	안산소방서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7(고잔동)	15335	031-470-7213
10	용인소방서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45(역북동)	17057	031-8021-0215
11	평택소방서	평택시 중앙로 273(비전동)	17901	031-8053-6214
12	송탄소방서	평택시 경기대로 1627(신장동)	17754	031-685-8213
13	광명소방서	광명시 금하로 472(소하동)	14316	02-2610-3102
14	시흥소방서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정왕동)	15055	031-310-0102
15	군포소방서	군포시 고산로 429(산본동)	15870	031-479-8102
16	화성소방서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399(행정리)	18598	031-8012-6214
17	이천소방서	이천시 경충대로 2739(관고동)	17379	031-645-5213
18	김포소방서	김포시 감암로 111(걸포동)	10092	031-980-4103
19	광주소방서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112(대쌍령리)	12735	031-799-2214
20	안성소방서	안성시 미양로 855(도기동)	17595	031-678-4212
21	하남소방서	하남시 대청로 76(신장동)	12953	031-799-4212
22	의왕소방서	의왕시 오봉로 9(고천동)	16077	031-596-0214
23	오산소방서	오산시 청학로 67(청학동)	18119	031-8012-6541
24	여주소방서	여주시 우암로 110(월송동)	12625	031-887-7213
25	양평소방서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2047(공흥리)	12547	031-770-0214
26	과천소방서	과천시 통영로 12(중앙동)	13807	02-331-4214
27	고양소방서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2(성사동)	10455	031-931-0103
28	일산소방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25(장항동)	10401	031-930-0102
29	의정부소방서	의정부 시의정로 48(의정부동)	11624	031-849-7212
30	남양주소방서	남양주시 평내로 25(평내동)	12224	031-590-0212
31	파주소방서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 1564(봉서리)	10836	031-956-9215
32	구리소방서	구리시 아차산로487번길 46(교문동)	11952	031-570-6212
33	포천소방서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38(구읍리)	11154	031-538-5212
34	양주소방서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156(오산리)	11504	031-849-8212
35	동두천소방서	동두천시 지행로 6(지행동)	11349	031-830-5214
36	가평소방서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36(대곡리)	12419	031-580-0212
37	연천소방서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892(은대리)	11025	031-830-0212

[붙임 3]

2019년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봉급표

호봉	가직군
1호봉	2,090,000
2호봉	2,099,830
3호봉	2,107,170
4호봉	2,115,810
5호봉	2,124,060
6호봉	2,133,620
7호봉	2,143,230
8호봉	2,152,870
9호봉	2,162,560
10호봉	2,172,290
11호봉	2,181,200
12호봉	2,190,140
13호봉	2,199,120
14호봉	2,208,130
15호봉	2,216,070
16호봉	2,224,050
17호봉	2,232,060
18호봉	2,240,090
19호봉	2,248,160
20호봉	2,256,250
21호봉	2,263,480
22호봉	2,270,720
23호봉	2,277,990
24호봉	2,285,290
25호봉	2,292,600
26호봉	2,299,020
27호봉	2,305,450
28호봉	2,311,920
29호봉	2,316,310
30호봉	2,320,710
31호봉	2,325,120

* 8시간 근로자 기준이며 6시간 근로자는 봉급의 75% 지급

* 가직군 : 영양관리사, 조리사, 사무보조, 청소원